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9고단 1094,1741(병합) 판결 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9고단1094, 1741(병합)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이승현, 민경호(기소), 권가희, 조윤정, 김승훈, 박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호준(국선)

판결선고 2020.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94】

1. 피고인은 2018. 11. 25.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E 카페에 '컴퓨터 부품인 CPU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컴퓨터 부품 'CPU i7 7700'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계 좌로 2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72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41】

2.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6. 20: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 아이디 'H', 닉네임 'I'로 접속하여 피해자 J(여, 22세)이 개인 방송 중이던 'K'의 방송채팅방에 들어가, 고별방송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으실꺼면 시원하게 보-지 한번 까주세요 음 방보는 여기 호구들 보-지 한번 까주면 다들 좋아할 겁니다'라는 채팅글을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2019고단1094 사건의 증거기록)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D,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 1. 각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대화내용 출력물,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입 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캡처자료

[판시 제2의 사실](서증: 2019고단1741 사건의 증거기록)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진정서
- 1. G 채팅화면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 징역 1월 ~ 30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벌금 5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1. 25.경부터 2019. 2. 1. 경까지 9회에 걸쳐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만 원을 편취하였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J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란물 유포 범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의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지불과 6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8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 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국인